

#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

- 공급위치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15-1번지 일원
- 공급규모 및 내역 : 아파트 지하 2층~지상 43층, 총 11개동, 2,100세대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
- 기관추천 특별공급 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: 10% 이내)

• 신청자격

- 대상자 :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(국가보훈대상자, 장애인, 이주대책 대상자, 중소기업근로자, 군인 등)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(세대주 및 세대원)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

※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아래조건을 충족하여야 함. (단, 국가보훈대상자, 장애인, 이주대책 대상자는 제외)

- ① 청약예금 : 85㎡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된 자
- ② 청약부금 : 청약 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안정금액이 85㎡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
-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(단,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)

※ 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」 제9조 제3항 별표2(청약예금 예치금액)는 현행을 유지하되, 2015.02.27에 공포·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청약 가능함.

- 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」 제5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(다자녀 / 노부모 / 신혼부부 / 생애최초 특별공급 포함)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불가 (특별공급은 한 차례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함. 단, 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」 제36조 제1호, 제55조 제1호, 제2호,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)

- 대상세대

(단위: ㎡/ 세대)

|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|
|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|
| 구 분(전용면적) | 75.61 | 84.65 | 84.81 | 84.98 | 84.69 | 99.99 | 계   |
| 기관추천 특별공급 | 6     | 106   | 12    | 35    | 40    | -     | 199 |

※ 상기 세대수는 현재 인허가 진행 중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시 변경될 수 있으니, 청약 전 입주자 모 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• 당첨자 신청방법

-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.
-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또는 해당기관의 확인서(추천서)를 발급 받은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,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.

[미신청시 당첨자선정(동 호지정) 및 계약불가]

- 대상기준 및 청약경쟁률이 1:1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 방법은 추첨에 의함.